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4일, 김예지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때 업주 등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시에도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¹⁾ 최근 5년 동안 보조견 출입거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6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대한

1)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과태료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상황(예: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장애인이 보조건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및 장소(예: 병원의 무균실, 식당의 조리실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조건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비장애인의 배려와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파악됨.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²⁾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에 관한 내용을 동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때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